


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칙</h2> | | 규정번호 | 3-4-30 | |
| | | | 제정일자 | 2017. 11. 10 | |
| | 개정일자 | - | | | |
| | 개정번호 | ver .0 | 총페이지 | 5 | |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고 한다)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및 수요자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교육과정이란 특정 학과 또는 전공의 학생들에게 전공 및 교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체계로서, 교과목, 이수구분, 이수단위, 시수, 이수시기 등으로 구성된다.

② 교과란 일정한 특성을 갖는 교과목들을 묶는 분류이다.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로 구성되며 특정한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교과를 정의하여 교과목을 분류할 수 있다.

③ 교육과정의 편성이란 교육과정을 개발, 개편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④ 교육과정의 개발이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교육과정의 개편이란 교육과정에서 일부 교과목을 폐지하거나 새롭게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 교과목명, 이수구분, 이수단위, 시수, 이수시기 등의 변경도 개편에 속한다.

⑥ 교육과정의 변경이란 환경 또는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이미 개발 또는 개편이 완료·확정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과정심의위원회) ①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교육과정편성표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

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,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일반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편성 원칙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교양 및 사이버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
5.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) ① 학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로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한다.

②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는 학과 일반교수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하되, 반드시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개편(신설, 폐지, 명칭변경, 학기 및 학년 변동 등)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교양교육운영위원회) ① 본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 관련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은 교양과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교양과장이 한다.

②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교양과 일반교수 전원과 교무부처장,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과 편성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교양 교과목 개편(신설, 폐지, 명칭변경, 학점 및 시수변경 등)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) ① 학과장(교양교과의 경우는 교양과장, 이하 같음)은 매년 대내외 환경 및 수요 분석, 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차년도 교육과정(안)을 작성하고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(교양교과의 경우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, 이하 같음)에 심의를 요청한다. 이때 교육과정(안)은 제7조의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만족해야 한다.

② 학과장은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(안)을 11월 말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,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특정한 목적이 나 개발방법에 의한 교육과정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서류의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대내외 환경분석, 수요분석
2. 교육과정 평가 결과
3. 교육과정 개선사항(분석 및 평가 결과에 의해야 함)
4. 교육과정편성표
5. 교육과정변경내용(교과목 신설, 교과목 폐지, 교과목 명칭변경, 학점 및 시수변경 등)
6. 교과목별 책임교수 명단
7. 국문 및 영문 교수요목
8.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회의록(교양교과는 교양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)

- ② 교학처장은 학과(또는 교양과)에서 제출한 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-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을 심의한다.
- ④ 제3항의 심의를 통과한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. 단, 교육과정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교육과정 편성원칙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되며, 세부 영역은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양교과 : 교양 필수, 교양 선택
- 2. 전공교과 : 전공 필수, 전공 선택

② 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과의 인재양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, 이를 위해 산업체 및 학생으로부터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이 조사·분석, 반영되어야 한다.

③ 전공교과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도록 편성한다.

- 1. 학기별 학점 및 시간을 적정 배분하여 과도 또는 과소한 수강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2. 기존 개설 교과목의 학기 변경은 지양하고, 부득이하게 변경 시는 과거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복학생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 한다.
- 3. 전공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필수과목은 총 개설학점의 30% 이내(2년제 5과목 이내, 3년제 8과목 이내)의 비율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4. 전공과목의 시수는 이론과목일 경우 학점과 동일하게 하며, 실습과목의 경우는 학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함을 권장한다.
- 5. 학과별 전공교과 실습 시수 비율은 아래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산업체협약교육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
| 계열 | 실습시수 비율 |
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공학 및 예·체능 계열 | 35% 이상 |
| 인문·사회계열 | 20% 이상 |

6. 학과별 전공교과의 학점, 시수, 교과목 수는 다음과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학점, 시수, 교과목 수는 학과 교육과정표의 전공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.

| 과정 | 수업연한 | 편성원칙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| | 학점 | 시수 | 교과목수 |
| 전문학사 | 2년제 | 82학점 이내 | 88시간 이내 | 33과목 이내 |
| | 3년제 | 114학점 이내 | 130시간 이내 | 46과목 이내 |
| 학사학위 | 1년제 | 24-30학점 내외 | 35시간 이내 | 24과목 이내 |
| 심화과정 | 2년제 | 66-72학점 내외 | 80시간 이내 | 10과목 이내 |

- 7. 가상강좌는 가상강좌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.
- 8.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.

④ 교양교과는 교양교육운영규칙에 따라 편성한다.

- ⑤ 신설 교과목은 기존의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 교학처와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⑥ NCS기반교육과정, 사회맞춤형교육과정,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, 산학협력 교육과정 등의 개발, 운영 및 평가에 따른 교육품질관리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과정 변경) ①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학과장(교양교과인 경우는 교양과장)은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변경의 사유가 포함된 교육과정 변경(안)을 작성하고 제7조를 준수하여 교학처장에게 교육과정의 변경을 신청한다.

③ 교학처장은 학과(또는 교양과)에서 제출한 교육과정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의 변경을 심의한다.

⑤ 제4항의 심의를 통과한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확정된다.

제9조(교육과정 폐지) ① 학과장은 산업환경 및 요구분석 결과 학과 인재양성 유형이나 교육목표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기로 판단되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.

② 학과장은 교육과정 폐지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과정 폐지 사유서(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포함)
2.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 회의록

③ 교학처장은 학과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폐지 사유와 대응 방안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심의 요청한 교육과정 폐지를 심의한다.

⑤ 제4항의 심의를 통과한 폐지 요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.

제10조(교과목 책임교수) ① 학과장은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하여 교과목별로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교과목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교과목 책임교수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교과목의 진행 및 평가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2. 해당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한다.
3. 강의계획서 및 교재선택, 수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강좌 담당교수에게 방향을 제시한다.
4. 해당 교과목의 강의 참여 교수들과 함께 해당 과목의 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
제11조(NCS 전담교수)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과에 NCS 전담교수를 두어 운영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위원회 회의록

| | |
|-----|--|
| 학과명 | |
|-----|--|

|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|
| 회의일시 | 년 월 일 () [: ~ :] | 회의장소 | | | | |
| 참석위원 | 소속 | 직위 | 성명 | 소속 | 직위 | 성명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재적위원 수 | | | 참석위원 수 | | | |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회의안건 및 내용 | |
| 기타 | |
| 의결내용 | |

| | | | | | | | |
|-----|--|-----|--|-----|-----|--|-----|
| 작성일 | | 작성자 | | (인) | 학과장 | | (인) |
|-----|--|-----|--|-----|-----|--|-----|